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재근 정책기획팀 팀장 02-725-7105 forr2018@pspd.org)

제 목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에 손해책임 확정 판결

날 짜 2015. 8. 25. (총 2 쪽)

보 도 자 료

대법원, '참여연대가 재벌 압박해 기부 강요' 주장 근거 없다고 최종 판결

1심, 2심에 이어 참여연대 음해에 대한 손해책임 판결 확정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

1.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을 최종 확인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8월 19일 대법원 민사3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와 뉴데일리 박성현 논설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했다.
2. 뉴데일리는 지난 2012년 6월 28일자 기사에서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천억씩 기부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을 해당 기업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어 2012년 8월 16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14년 3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3단독(판사 오규희)는 피고(뉴데일리 등)의 주장이 '참여연대가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하게끔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재벌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하였거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공지의 사실이거나 명백하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피고의 주장이 '객

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초하여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며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여 뉴데일리와 박성현 논설위원은 참여연대에 각각 200만 원을 배상하라’ 고 판결했다. 이어 2015년 4월 21일 서울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판사 한숙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그동안 참여연대의 기업감시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들이 근거 없는 음해에 불과하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3. 이번 판결은 언론사의 근거 없는 시민단체 비방 보도에 경종을 울리고,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참여연대의 솔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거나 무차별적으로 비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계기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와 비방이 중단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비방과 명예훼손 시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끝.